

부산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489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5.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4. 선고 2020가단679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68,3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 내지 8행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녀관계이다.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소외 D은 2008. 4. 2. 그 소유인 양산시 E 답 2347㎡를 분할하여 그 중 양산시 F 답 90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하고, 위 양산시 E 답 2347㎡ 중 분할하고 남은 나머지 대 973㎡를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두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92,75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관련 판결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관련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98,681,616원 상당의 차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94,068,384원(= 192,750,000원 - 98,681,61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원 등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아버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F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고, 건축비 중 상당 부분을 위 D으로부터 지원받은 점, ② 원고 주장의 변제금 192,750,000원도 모두 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D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④ 설령 D과 피고가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더라도 이는 위 두 사람 사이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D 및 피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동일시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아버지인 D으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비용 마련을 위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그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192,7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더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결로 인해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위 각 건물의 건축비용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선회하여 본다.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2993 판결 등 참조), 관련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위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건축비 명목의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황지현, 판사 박승휘